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 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

회생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을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대

3. 주요내용

가.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한도 상향

1)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

2)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 중 “30억원”을 “50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3(소액영업소득자의 범 위)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 란 <u>30억원</u> 을 말한다.	제15조의3(소액영업소득자의 범 위) ----- ----- -- <u>50억원</u>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상사법무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634